영등포구의회 제2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討報告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5. 16.

社會建設委員會專門委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討報告

1. 경 과

의안 제222호로 2017년 5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우리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지역 효행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복지카드인 "백세카드" 사업의 근거를 확보하여 사업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어르신 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노인복지법」제26조(경로우대)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7. 3. 16. ~ 4. 5.)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어르신들에게 경로우대와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를 실현을 위해 시행 중인 어르신복지카드제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임.

O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8조를 신설, 지역효행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어르신 복지카드제를 운영하고 참여업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참여한 업소에 대하여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② 현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어르신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복지욕구도 또한 다양화 되고 있으나 현실은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미흡한 실정임.

- 현재 우리구에서는 2017년 1월부터 어르신 복지카드인 "백세 카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2017년 4월을 기준하여 8,704개의 카드를 발행하였으며, 음식점, 이·미용시설, 안경점 등 관내 총 446개 업소에서 참여하고 있음.
-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우대 및 지역 효행문화 장려를 위하여 "백세카드" 운영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업체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어르신 공경의식을 고취시키고 노인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며, 현재 우리구 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